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신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경유)

제목 2026년 7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1. 2026년 7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7. 1. ~ 2026. 7. 31.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7.1. ~ '26.7.31.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9.30.)

마. 신청기간 : **2026. 8. 3.(월) ~ 8. 10.(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 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 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주무관

조윤경

주무관

이상훈

과장

전결 2026. 7. 30.

이수진

협조자

시행 선원해사안전과-6522

(2026. 7. 30.)

접수

우 59713 전라남도 여주시 여서1로 107

/ <http://yeosu.mof.go.kr>

전화번호 061-650-6046

팩스번호 061-654-2456

/ yun24@korea.kr

/ 대국민 공개